

제 2 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가. 개정 방식의 기본 원칙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 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일부개정 방식에는 개정 대상이 되는 기존 법령과 새로운 개정 법령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 개정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 법령 중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 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어느 법령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본다.⁶⁷⁶⁾

다.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방식의 선택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전부개정 방식과 폐지·제정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 방식은 해당 법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이고, 폐지·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기존 법령과 신 법령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예: 「건설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 것), 제도 그 자체가 신규 양 법령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 방식을 취한다(예: 「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

2. 일부개정 방식

가. 일반적인 유의 사항

일부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내용에

676) 자세한 내용은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5장 부칙 규정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 규정 방식 13) 폐지·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의 경과조치를 참고한다.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부개정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1)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개정되는 기존 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한다.
- 2)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령의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제명을 바꿀 수 있다.⁶⁷⁷⁾
- 3) 법령 개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비 대상 법령과 같은 법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거나 공포된 적은 없는지, 정비 대상 조문 중에서 공포는 됐지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은 없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나. 개정법령의 유형 표시와 제명

1) 유형 표시

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령안은 먼저 개정되는 법령의 유형 및 호수 표시(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 법령 유형을 적고 해당 법령의 개정절차가 끝나고 공포할 경우에 공포번호를 적을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그 다음 줄에 개정법령의 제명을 적는다.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에서 인용하는 경우,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한다.⁶⁷⁸⁾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하게 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법령 제명

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일부개정령안”이라고 쓴다.

677) 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3726호, 2016. 1. 6. 공포, 2016. 7. 7. 시행)하면서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

678)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정·개정되는 법령부터 띄어쓰기를 시작하면서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하였다.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개정지시문

법령을 개정하는 개정법령안은 해당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붙여야 한다.⁶⁷⁹⁾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은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표현하며, 개정지시문을 적은 후 줄을 바꾸어 조문별로 개정할 사항을 쓴다.⁶⁸⁰⁾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라. 개정 부분의 인용

1) 개정 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가) 최소단위 지정

개정되는 자구, 삭제되는 자구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법령 중 어느 부분인지

679)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개정지시문’이라 하고,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를 ‘개정문’이라 한다.

680) 종전에는 일부개정의 경우 “○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전부개정의 경우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표현했으나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05. 1. 1.부터 일부개정은 “○○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전부개정은 “○○법(영)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표현하기로 했다.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 또는 목으로 되어 있거나 이것이 다시 전단·후단, 본문·단서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또한 조문이 본문과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개정하려는 부분이 각 호가 아닌 본문에 있는 규정이면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 인용해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을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한다.

나) 인용 시의 띄어쓰기

개정 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조·항·호·목을 붙여 쓰고, 본문·단서, 전단·후단은 띄어 쓰며, “중”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쓴다.

제5조제1항√본문√중 “---”을 “---”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을 “--”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을 “--”로 한다.

2)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

개정될 자구를 인용부호(“ ”)로 인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용 대상 자구는 개정 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 단위로 한정한다.⁶⁸¹⁾ 이 경우 법령의 조항(“제○조제○항”)은 하나의 명사로 보며, 그 조항이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이어서 그 앞에 “법”이나 “영”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영”도 함께 인용한다.

681) 같은 항이나 같은 호에 개정 내용과 같은 부분이 또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국토해양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300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재생”을 “재활용”으로 한다.(○)
 “재생하는”을 “재활용하는”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법(영) 제5조제1항”을 “법(영)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나) 구와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친절히 앞뒤 구와 절 전체(십표를 포함한다)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구와 절 중 명사구만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사구만 인용하고 조사는 조사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거나 개정 대상이 아닌 동일 명사구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용하지 않는다.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영업자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영업자는 총리령”을 “영업자 등은 교육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로 한다.(×)

다) 원칙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개정하되,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하여 개정문이 매우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부를 개정한다.

3) 둘 이상의 항이 있는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 남아 있는 경우의 인용

제2항이 삭제되고 제1항만 남아 있는 조문의 개정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제○조”로 인용하지 않고 “제○조제1항”으로 인용한다.⁶⁸²⁾

682) 2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다른 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1항만 남게 되는 조문의 경우, 남아 있는

마. 개정문의 작성기준

1) 작성 순서와 표현 방식

가)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 어느 법령 중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도 조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⁶⁸³⁾

나) 개정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1)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조 중 “A”를(을) “B”로(으로) 한다”라고 표현한다.
- (2) 조·항·호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항, 호)를 신설한다”라고 표현하고, “제○조를 삽입한다” 또는 “제○조를 추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3)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항, 호)를 삭제한다”라고 표현한다.

다) 기존의 조·항·호의 문구 중 약간의 자구를 추가·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제○조(제○항제○호) 중 “~~~” 다음에 “~~~”을 추가(삽입)한다.’ 또는 ‘제○조(제○항제○호) 중 “~~~”을 삭제한다.’고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으나, 개정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제○항제○호) 중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예: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광역시”를 삽입한다. (×)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

제1항이 자동적으로 해당 조의 본문이 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해당 조항을 인용할 경우 제○조제1항으로 인용하지 않고 제○조로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행 법령집에 제2항이 삭제된 경우에도 형식상 제1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에 따라 많은 국민이 그 조문을 인식할 때 현행 법령집을 바탕으로 제○조 제1항이라고 읽고 인용하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한다.

683) 종전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의 끝 부분에서 일괄 개정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정 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일일이 각각의 조·항·호, 단서·전단·후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조제3항, 제○조제3항 단서 및 제○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예: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의 “·부산광역시”를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

라) 장·절로 구분된 법령에서 조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항에 단서·후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에 ~~를 신설한다.”고 하여 신설하는 조·항·호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한다.

2)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 원칙

가) 개정문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여러 개의 개정 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너무 길게 작성하면 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거꾸로 간단한 개정 사항을 너무 세분하여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작성하면 번거롭게 된다. 따라서 개정문은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끊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⁶⁸⁴⁾

제3조 중 “-----”을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

3)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 예외

가) 연속되는 다수 조문이나 인접한 여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조문마다 개정문을 둘 필요 없이 하나의 개정문으로 한다.

684) 예시의 경우 “제3조 중 “---”을 “---”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 작성하게 되면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개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예시] 연속되는 여러 조문의 경우(예: 제3조, 제4조, 제5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제4조() -----.
제5조() -----.

[예시] 연속되지 않은 여러 조문의 경우(예: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제5조() -----.
제7조() -----.

나) 한 조문에 여러 개의 항·호가 있고 이들의 개정 사항이 많거나 항·호의 부분개정과 전부개정이 동시에 필요한 것과 같이 개정문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조라도 적절히 나누어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한다. 별표의 개정문도 마찬가지이다.

제3조의 제목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제3조제3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을 “---”로 한다.

4) 개정문의 연결

하나의 개정문에 여러 개의 개정 사항이 있는 경우 각 개정 사항마다 “~~하고, ~~하며, ~~하고, ~~하며”로 연결하고, 맨 끝은 “~~로 한다.”로 하여 문장을 마친다. 다만, 하나의 법령 문장에 개정 사항이 둘 이상 있으면 그 개정 부분은 “~~로, ~~로”와 같이 연결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A”를 “B”로, “C”를 “D”로, “E”를 “F”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

바. 제명과 조·항·호의 개정 방식

1) 제명의 개정

법령의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개정한다. 제명의 개정 부분은 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 즉, 개정 부분의 맨 처음에 두어야 한다.

제명 “-----”을 “-----”로 한다.

2)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가)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괄호를 포함해 제목 전체를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목이 긴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개정할 수도 있다.

제○조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조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나)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방식

(1)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한다.⁶⁸⁵⁾

685) 제○조에 항이 없는 경우 ‘제○조 중 “~~~”을 “~~~”로 한다.’와 같이 개정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개정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조 제목에 있는 경우라면 조 제목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제○조

(2)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같은 조, 항이나 호에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을 “~~~”로,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한다. 같은 조·항 또는 호의 경우에도 개정 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적시하여 개정한다.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을 “----”로 한다.
제○조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을 “---”로 한다.

(3)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조에서 항 또는 호가 다른 둘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조제○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4)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을 각각 “~~~”로 한다 방식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각각”을 표시해야 한다.⁶⁸⁶⁾

제○조제○항 및 제○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제목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라고 해야 한다.

686) 여러 조문을 계속해서 열거할 때, 같은 수준의 조·항·호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호)”를 쓰지 않고 바로 연결하고, 다른 수준의 조·항·호는 위 수준의 “같은 조(항·호)”를 쓴 후 연결한다. 다만, 본문, 단서, 각 호 외의 부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수준일지라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같은 조(항·호)”를 쓴다.

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를 각각 “~~~”로 한다.(같은 수준)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를 각각 “~~~”로 한다.(다른 수준)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를 각각 “~~~”로 같다.(다른 수준)

이 때 ‘같은 수준’의 기준은 단순히 ‘항’과 ‘항’, ‘호’와 ‘호’ 또는 ‘목’과 ‘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아래에서 ‘항’과 ‘항’, 같은 항 아래에서 ‘호’와 ‘호’, 같은 호 아래에서 ‘목’과 ‘목’을 말한다.

(5) 조(항)에 각 호가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부분이 각 호 외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여 개정한다.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

(6)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개정 부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방식

가) 항이 없는 조에서 제2항 이하를 신설하는 방식

(1) 현행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항 등을 신설하는 경우⁶⁸⁷⁾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2) 현행 조문의 일부분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687) 본문만 있는 조에 항을 신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여 같은 조의 본문이 제1항이 됨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제1항이 되는 것으로 했으나 국민의 이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와 같이 본문이 제1항이 됨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나) 각 호가 없는 조·항에 각 호를 신설하는 방식⁶⁸⁸⁾

제○조(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다)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단서나 후단을 신설하려는 조 또는 항이 각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또는 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라) 기존의 조·항·호의 맨 끝부분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5개의 조·항 또는 호가 있는 법령을 예로 함)

[예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

688) 이 경우 전부개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시] 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

[예시]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02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마)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1) 개정 방식

기존의 조·항 또는 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에는 기존 조·항·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과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조 또는 호를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가지번호 방식)이 있다.

(2)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한다. 다만, 추가될 위치 앞의 조·항·호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역으로 조·항·호를 끌어올려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

법령의 조·항·호는 해당 법령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이를 이동할 때에 신중해야 하며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정비도 해 주어야 한다.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의 수가 너무 많거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을 그 법령 중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 중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서술하는 ‘가지번호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시]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세 개 항 또는 세 개 호로 된 조에 두 개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의 예]

제○조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같은 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3. -----)

④ -----(호의 경우: 4. -----)

[예시] 여섯 개 항으로 된 법령에 두 개 항을 추가하는 경우(제2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제5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예)

제○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⑦ -----.

(3) 가지번호 방식

가지번호 방식은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에 새로운 조나 호가 신설되어 그 뒤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밀리면서 이를 모두 개정해야 할 경우,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신설되는 조나 호의 다음에 있는 조나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개정 방식이다.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 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혹 이를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지번호 방식에 따라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⁶⁸⁹⁾ 목의 경우 주로 하위법령의 별표나 서식에서 많은 목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목이 열거된 경우 개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위법령에서는 가지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689) 10개의 조로 된 법령에 제3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3조를 신설하여 기존의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1조로 개정해야 하고 만약 조문의 내용에 제3조나 그 후의 조를 인용하는 경우에 이를 개정된 조번호로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지번호 방식을 사용하여 조를 신설하면 기존의 조문은 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예시] 기존의 제○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제○조의3(○○) -----.

[예시] 기존의 제○호 다음에 두 개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호의2 및 제○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2, -----
 ○의3, -----

[예시] 제3조(호) 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3조(호)를 제3조(호)의2로 하고, 제3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

가지번호는 조·호와 하위법령에서 많이 열거된 목(별표나 서식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로운 항을 신설하려면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을 취해야 한다.

(4) 추가되는 조가 장·절 등의 경계에 들어가는 경우의 개정 방식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갈 장·절을 표시한다.

[예시]

제○장(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⁶⁹⁰⁾
 제10조의2(○○) -----.

690) 장이나 절의 경계에 신설할 때에 “제○장(절)”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앞 장(절)의 마지막에 신설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4) 조·항·호 등의 전부개정 방식

[예시] 조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예시] 항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예시] 호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예시] 전부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은 경우

제○조제2항(제2호)부터 제5항(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2. -----)

③ ----- (호의 경우: 3. -----)

④ ----- (호의 경우: 4. -----)

⑤ ----- (호의 경우: 5. -----)

[예시] 조·항 중의 본문, 단서, 전단, 후단, 각 호, 각 호 외의 부분을 전부개정하는 경우⁶⁹¹⁾

제○조제○항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91) 단서를 후단으로 개정하거나 후단을 단서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를(후단을) 후단으로(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다만,) -----.

5) 조·항·호 등의 삭제 방식

[예시] 조(항·호)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제○조(제○항, 제○호)를 폐지한다.(×)

[예시] 조(항·호)의 단서·후단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항·호)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예시] 삭제하는 조·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조제2항(호)부터 제5항(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예시] 삭제된 조가 있는 경우(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예시]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⁶⁹²⁾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692) 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2조와 제6조 사이에 제5조의2가 있으면 가지번호인 제5조의2를 명시해야 한다. 가지조문을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6)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 방식

가)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해당 조를 전부개정하고 두 개의 조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한다.

[예시] 제2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

제2조의3(○○) -----.

나)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예시]

제5조 중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위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조문 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을 “---”로 한다.

다) 두 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시]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을 “-----”로 한다.

② -----.

라) 세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1항과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개정문이 복잡할 때에는, 개정문을 적절히 끊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시]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을 “----”로 한다.

③ -----.

위 개정문의 제3항 이하의 개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예시]

제○조제3항 중 “----”을 “----”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마)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제2항을 전부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운 제2항과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시]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
- ③ -----.
- ④ -----.

바)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하나의 항을 삭제해 하나의 항만 남게 되는 경우

[예시]

(제○조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한다.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을 남기고 다른 항은 모두 삭제하는 경우 남는 항을 특별히 항이 없는 조로 정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항이 있다가 하나의 항만이 남게 되어 항번호를 붙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 전체를 전부개정하여 항 표시 없는 본문으로 바꾸되, 해당 조문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 제○조가 다섯 개 호로 되어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 방식

[예시]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위의 경우에 제3호의 개정 내용과 나머지 부분의 개정 내용을 나누어 두 개의 개정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아) 어느 조(항)의 각 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 호의 수가 변경된 경우

[예시] 각 호의 수를 줄이는 경우(다섯 개 호를 세 개 호로 하는 경우)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예시] 각 호의 수를 추가하는 경우(세 개 호를 네 개 호로 하는 경우)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4. -----

다만, 이 경우에 ‘제○조제○호부터 제○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호 및 제○호를 각각 신설(삭제)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문을 만들 수도 있다.

자) 조(항)의 중간에 있는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을 사용한다.

[예시] 하나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예시] 둘 이상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7) 특수한 개정 방식

가) 조로 되어 있지 않은 법령에 조를 추가하는 개정 방식⁶⁹³⁾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나) 조·항·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예시] 조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693) 조로 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 중 “~~~”를 “~~~”로 한다.’와 같이 개정문을 만든다.

[예시] 같은 조 안에서 항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예시] 같은 항 안에서 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같은 항 제5호 및 제1호로 한다.

[예시] 별지나 서식을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1로 한다.

사.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방식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개정하되, 제목이 긴 경우 자구 일부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개정한다.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2) 장·절 등을 추가하는 방식

장이나 절 등을 추가할 때에는 해당 장이나 절에 신설되는 조항을 알 수 있도록 장 또는 절 다음에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포함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장 ○ ○ ○
∨

제○조 -----
제○조 -----
제○조 -----

3) 장·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제6장(제50조부터 제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장 ○ ○ ○
∨

제50조 -----
∴
제58조 -----

4) 장·절 등을 삭제하는 개정 방식

장 또는 절 등을 삭제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해당 장이 몇 조부터 몇 조까지인지를 병기해야 한다.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삭제한다.

5) 기존의 조문에는 변동 없이 장·절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

가) 장·절의 제목을 추가하는 경우⁶⁹⁴⁾

제○조 다음에(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장 ○○○
 √

나) 장·절의 제목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 다음의(앞의) “제○장 ○○○”을 삭제한다.

아. 부칙 개정 방식

1) 기존 법령의 부칙 개정

법령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거나 그 이후에 일부개정된 법령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예컨대, 법령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개정 방식

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나) 개정문에서는 개정 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부칙”이라는 자구를 붙이고, 일부개정 법령의 부칙에는 법령공포번호와 해당 개정 법령의 제명을 병기한다.

다)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⁶⁹⁵⁾

694) 이런 경우 종전에는 ‘제○조 다음에(앞에) “제○장 ○○○”을 삽입한다.’라고 표현하였으나, 일반적인 개정문의 표현방법과 달라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3) 두 개 조로 된 부칙(또는 본칙) 중 제2조를 삭제하는 개정 방식⁶⁹⁶⁾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4) 부칙과 별표(또는 별지 서식)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별표(또는 별지 서식), 부칙의 순서로 개정문을 쓴다.

별표(또는 별지 서식) 중 “---”을 “---”로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별표(또는 별지 서식)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은 위와 같이 하되, 개정 내용은 별표의 개정문, 부칙 개정문, 별표의 개정 내용의 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별지에 별표의 개정 내용 수록)

5) 기존 법령의 부칙을 재개정하는 방식

개정된 기존 법령의 부칙을 다시 개정하려는 경우(같은 부칙을 두 번 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정 대상 부칙조문을 좀 더 정확히 특정하는 다음의 형식에 따른다.

695) 종전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한다.

696) 종전에는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하여 조문의 조명(“제1조”를 말함)과 제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번잡해지고 기존 조문은 연혁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74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제3항 중 “1998년 6월 30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자. 표와 서식의 개정 방식

1) 일반적인 유의 사항

- 가) 별표를 개정하는 개정문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별표의 제목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 나) 별표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별지와 같이 한다”⁶⁹⁷⁾로, 별표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할 때에는 개정문의 본칙 부분에 개정 부분을 적고,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할 때에는 개정문의 부칙 부분 다음의 별장에 개정 부분을 적는다.
- 다) 별표를 신설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일부개정 시 해당 부분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가급적 호, 목 등을 붙인다.
- 라) 별표의 제목 중 일부를 개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별표의 제목 중 “~~~”를 “~~~”로 한다.
- 마) 별표에 있는 호를 개정할 때에는 “별표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의 난 중에 있는 호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란의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 바) 별지나 서식에 대한 개정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나 서식 하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1 중 “~~~”를 “~~~”로, “~~~”를 “~~~”로 한다.
별지 2 중 “~~~”를 “~~~”로, “~~~”를 “~~~”로 한다.

697) 법령을 일괄개정법령안(복수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방식)의 형태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하지 않고 별지에 번호를 붙여 「별지 0과 같이 한다」라고 표현한다.

사) 부칙 규정 사항의 별표 규정

부칙 규정 사항(특히 특례 규정) 중 그 내용을 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해당 부칙에서 표 형식으로 규정하고, 별표 형식으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본칙 관련 별표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성격을 띠면 예외적으로 별표 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관련 별표의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본칙 관련 별표 다음에 가지번호 형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별표의 일부개정 방식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별표 1 및 별표 2를 예로 함)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구청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가) 대구청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1 중 대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 구 청	-----	-----
-------	-------	-------

나) 대구청란의 일부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1 중 대구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대구청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

별표 1의 대구청의 위치(또는 관할구역)란 중 “~~~”을 “~~~”로 한다.

라)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추가하는 개정 방식

별표 1의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산 청	-----	-----
-------------	-------	-------

마) 대구청란을 삭제하는 개정 방식

별표 1 중 대구청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 나.
- 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조제○항	50	100	150
나.	법 제△조제△항	100	150	200
다.	법 제□조제□항	150	200	250

가) 나목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조제△항	110	160	210
----	----------	-----	-----	-----

나) 나목란의 일부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조제▽항

다) 나목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을 “~~~”로 한다.

라) 제2호에 목을 신설하는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조제△항	110	160	210
----	----------	-----	-----	-----

마) 제2호나목을 삭제하는 개정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3) 별표의 전부개정 방식

별표 1을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4) 별표를 별표 둘로 하는 개정 방식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5) 별표 둘을 별표 하나로 통합하는 개정 방식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6) 서식의 개정 방식

가) 서식을 개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서식을 일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앞쪽 또는 뒤쪽임을 특정해야 한다.

예)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즉시”로 하고, 같은 쪽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나) 서식의 추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기존의 서식과 추가되는 서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1)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 내용이 같은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 전부개정 방식

가. 개정법령의 제명

개정되는 기존 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전부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령안”이라고 쓴다.⁶⁹⁸⁾

【법률】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소득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698) 종전에는 “소득세법개정법률안”으로 썼으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2005년 1월 1일부터 위와 같이 변경했다.

나. 전부개정법령안의 형식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지시문을 붙이고, 다시 줄을 바꾸어 개정된 후의 제명을 쓰며, 그 이하는 제정의 경우와 같이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쓴다.

<p>법률 제○○호</p> <p style="text-align: center;">○○○법 전부개정법률안</p> <p>○○○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p> <p>제1조(○○) -----.</p> <p>제2조(○○)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p>

다. 제정법령안의 형식

<p>법률 제○○호</p> <p style="text-align: center;">○○○법안</p> <p>제1조(○○) -----.</p> <p>제2조(○○)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p>

제정법령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의 “○○○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은 개정법령의 제명을 붙이지 않고, “○○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에 대체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표현도 하지 않으며, 바로 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쓴 다음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쓴다.

4.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문 작성 방식

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 개정의 의의

법령의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현행 법령’의 조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책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관계 법령이나 조문의 개정에 따른 부수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법령이 공포되어 개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의 개정조문을 말한다)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정 법령의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법령이 기존 법령에 흡수되는 시점을 ‘시행일’로 보고 있으므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은 기존 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일부개정법령” 형식으로 독립하여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대한 개정문과는 달리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에 대한 개정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나.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판단기준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지는 ‘개정하려는 조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경우 개정 과정에서 시행일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의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시행일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국회 제출일’을 기준으로 공포 후 시행 전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령안의 주된 시행일을 정하고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 주된 시행일은 도래하였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⁶⁹⁹⁾에도 공포 후 시행 전 법령 개정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또한, 개정하려는 법령 ‘조문’의 부분과 같은 부분에 대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하려는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같은 부분이

699) 종전에는 법령안의 주된 시행일은 도래하였으나 일부 조·항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전체를 현행으로 개정하도록 했으나 해당 조·항의 경우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현행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임을 특정하는 개정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다만, 제정법령의 경우 제정법령 외의 종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령 호수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거나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제2조제1항 본문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경우 제2조제1항 단서를 개정하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다면 제2조제1항 본문의 개정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이 아니라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개정하면 된다.

다. 공포 후 시행 전 조문 개정 시 일반적인 작성 방법

1)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만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 첫머리에 쓰는 개정지시문에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적고, 조문의 개정문은 일반적인 일부개정 형식으로 표현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

전부개정법률을 공포 후 시행 전에 다시 개정하려는 경우에도 시행 전 법률을 개정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전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적는다.

법률 제○호 ○○○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2)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개정 법령에서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지시문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작성하고,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는 개정문에 그 조문마다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의 공포번호와 제명을 적는다. 개정문 작성 순서는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조문 순서대로 개정문을 작성하며,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연이어 있는 경우에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의 공포번호를 일괄하여 붙일 수 있다.

그리고,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아직 흡수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령 형식)의 내용을 다시 개정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의 개정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은 법령이 공포되었더라도 시행일 전에는 흡수되지 않고 ‘일부개정법령’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법령의 개정문 자체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시행 예정 법령(일부개정법령의 개정문이 반영된 조문 형태)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현행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는 통상적인 개정문 방식이 더 작성·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은 ‘개정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개정문이 반영된 조문을 전제로 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을 “▲▲”으로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을 “■■”으로 한다.

제10조 중 “◎◎”을 “●●”으로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법례]

대통령령 제2968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략)

별표 1 제12호 중 "푸란"을 "퓨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클로르데칸"을 "클로르데콘"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린단"을 "린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폴리클로리네이트드나프탈렌(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s)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을 제30호로 하고,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BDE-209)

29.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다만, 예외적으로 “~의 개정규정” 표현 대신에 “~의 개정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부분’은 “a”를 “b”로 한다라는 개정문 전체를 의미하며, 개정문 자체를 개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입법례]

대통령령 제2822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8. 1. 공포)	대통령령 제29786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5. 21. 공포)
별표 2 제2호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생략) ※ 의료기기 등급별 2019. 7. 1. ~ 2023. 7. 1. 시행	별표 2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중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법 제56조제1항제4호”로 한다. ※ 2019. 6. 12. 시행 (표 생략) 대통령령 제2822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부분 중 “제2호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를 “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로 한다. ※ 2019. 6. 12. 시행

개정하려는 조에 현재 시행 중인 내용과 시행예정인 내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개정 대상(항·목)별로 각각 개정문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분리하여 개정문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나 ‘항’ 전체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 방식으로 전부개정할 수 있다.⁷⁰⁰⁾

700) 국회도 개정되는 항·호·목 중 공포 후 시행 전 항·호·목의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되는 조문이 없고, 개정되는 조문에 복수의 현행 항·호·목과 공포 후 시행 전 항·호·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문을 분리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포번호와 제명을 기입하여 예외적으로 조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국회, 『법제이론과 실제』, 2019년, 181쪽).

라. 시행일에 따른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 방식

1) 개정 조문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개정 내용을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보다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적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는 조문의 시행일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과 일치시키도록 한다. 이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령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에 맞춰 규정하지 않는다면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공포 후 시행 전 법령보다 먼저 시행하게 되는 논리 모순적 결과가 발생하고, 공포 순서와 시행 순서가 뒤바뀌는 등 흡수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에 호를 신설한 사례

대통령령 제2754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0. 18. 공포, 2017. 1. 1. 시행)	대통령령 제277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12. 30. 공포, 2017. 1. 1. 시행)
<p>제145조제2항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6.·7. (생략)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대통령령 제2754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8의2.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이 경우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에 따라 부칙을 둘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부칙은 흡수개정방식이 아닌 증보개정방식을 따르므로 종전 규정이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례]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둔 사례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2020. 6. 23. 공포)	대통령령 제3141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21. 1. 26. 공포)
<p>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5와 같으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1. 영어 과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나.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경사이하 채용시험은 제외한다)</p> <p>2. 한국사 과목: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한국사시험 ※ 2022. 1. 1. 시행: 제31조, 제34조, 별표 4~8</p>	<p>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대체할 수 있다”를 “대체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영어 과목: 별표 7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별표 7의2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22. 1. 1. 시행 부 칙</p> <p>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제31조,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8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02
폐지방식
법령의 개정방식과

2) 개정 조문의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빠르게 해야 하는 경우

개정하려는 조문에 대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 경우로서 개정 조문의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빠르게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22. 10. 1. 시행 예정인 “a(현행 규정)”를 “b”로 개정하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데, “a”를

“c”로 개정하여 2022. 5. 1. 시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개정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현행 규정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입법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을 신설하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데, 해당 조문의 시행 전에 제18조의2를 다시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대통령령 제286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3. 6. 공포)	대통령령 제28919호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5. 28. 공포)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생략)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입신고) (생략) 제18조의3(수입검사 등) (생략) ※ 2018. 10. 1. 시행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우선구매)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금액 중 최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2018. 5. 29. 시행 대통령령 제286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한다. ※ 2018. 10. 1. 시행

[입법례] 별표 4를 전부개정하는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 전에 별표 4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현행)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2018. 12. 18. 공포)	대통령령 제3104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2020. 9. 22. 공포)
<p>[별표 4] (비고 중 전단)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p>	<p>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중 비고 전단)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2021. 1. 1. 시행</p>	<p>별표 4 비고 전단 중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 “4년이 되는 해”를 “4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로 한다. ※ 2020. 9. 22. 시행 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별표 4 비고 전단의 개정규정 중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 “4년이 되는 해”를 “4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로 한다. ※ 2021. 1. 1. 시행</p>

02
입법례의 개정 방식

3) 개정하고 있는 법률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더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개정 조문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포번호를 특정하여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경우에는 개정 조문의 시행일이 언제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므로 정부 입법과정 중에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제출일’을 기준으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라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 개정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부령의 경우에도 개정 조문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 이전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는 개정령이 공포되는 경우라면 공포 시, 공포 당시의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인지, 시행하는 시점의 현행 규정(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반영된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인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방식을 따른다.

5.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가. 필요성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법령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종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던 업무 중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장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되었는데, 당시 위 개정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해당 조문은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의 공포·시행에 맞춰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항 중 에너지와 관련된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당시 「정부조직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각 개별 법률도 동시에 개정되었다.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면 법령 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한다.

또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특례 규정 등을 개별 법률에서 남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당 법률 외의 다른

법률의 개정만으로 특례가 신설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 외에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를 신설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특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방식’을 통해 개정할 수 없고, 개별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별 법률에 의한 특례 등의 신설을 제한하는 법률

근거 법률	제한 내용	관련 조항
국가재정법	특별회계 설치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기금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 신설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의 수용·사용 신설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근거 법률	제한 내용	관련 조항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농지법	농지 소유 특례 신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 신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신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 신설	제3조(지방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지방채 발행 신설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 21.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역·지구 등 신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나. 개정 방식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i)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법을 개정하면서 A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B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ii)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법과 B법을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일괄개정법령안을 만드는 방식).

다. 법령 제명

가) A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B라는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제명에 B법령의 개정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요컨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제명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법령과 같다.

나) A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폐할 즈음에 B, C라는 여러 관계 법령 규정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의 원인을 일으킨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하기에는 개정 내용이 중요하여 부적당할 때나 여러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따로 법령의 제정 형식을 취하여 그 본칙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명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히 붙이도록 한다.

[예시]

“~을 위한 ○○개 법률(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통령령안, 00부령안)”

라. 개정문 표현 방법

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개정)”과 같은 조 제목을 붙이고, 개정되는 법령이 다수인 경우에는 법령별로 각각 항을 나누어 개정문을 작성한다.

[입법례] 부칙에서 하나의 법령을 개정한 사례

개별소비세법
부 칙 (법률 제12157호, 2014. 1. 1.)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입법례] 부칙에서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한 사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부 칙 (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나) 본칙으로 복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정 대상 법령별로 조를 두고 개정지시문을 붙인다. 각 조마다 “(○○법의 개정)”과 같이 조 제목을 붙이고 개정문을 작성한다.

[입법례] 본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한 사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장 기획재정부 소관

제1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생략)

제2장 교육부 소관

제2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이하 생략

마. 개정 한계

1) 개정법령 간의 관련성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을 하나의 일부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려는 둘 이상의 법령 간에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가) 부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자구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만 한정된다(제2편 제5장 9. 다른 법령의 개정 관련 규정 참조).

나) 본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복수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법령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워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i)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 취지가 같을 것
- ii) 예산이나 행정 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개정법령 종류의 동질성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예컨대 법률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묶어서 개정할 수 없다). 부령이면 공포권자가 같은 부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공포권자가 다른 부령은 함께 개정할 수 없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수 없다.

6.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가. 공동부령의 형식

법률 등에서 어떠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보통은 어느 하나의 '부(部)'의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예: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위임하는 사항이 둘 이상의 부의 소관 사항 등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예: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부령은 관련되는 해당 부가 함께 공포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다만, 부령의 공포번호는 부별로 따로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령 제68호
 교육부령 제97호
 보건복지부령 제400호
 국토교통부령 제305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 (이하 생략)

나.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공동부령은 관련되는 해당 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이를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부가 공동으로 개정해야 하며 어느 하나의 부만이 단독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8호
 해양수산부령 제14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공동부령의 공포번호는 부별로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다고 해서 부별로 별도의 부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부령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부령의 소관 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추가되는 부의 공동부령에 대한 제정형식의 입법이 필요 없다. 다만, 그 이후의 개정 시 추가되는 부의 공포번호만 부여하면 되며, 공동부령의 소관 부 간의 업무조정 으로 공동부령의 소관 부 중 어느 부가 없어질 경우에도 해당 부의 공동부령 폐지는 필요 없고 그 이후부터의 해당 공동부령 개정 시 해당 부의 공포번호를 삭제하면 된다.

7. 폐지 방식

가. 폐지 방식의 유형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방식은 어느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하고, 후자의 방식은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한다.

나. 폐지 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례

1)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부칙 중 시행일에 관한 조 다음에 조를 두어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을 폐지한다.	

폐지 법령의 호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되는 법령의 호수는 폐지되는 법령의 제정 호수(해당 법령이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그 전부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호 ○○법을 폐지한다.	

2) 폐지 법령의 형식

“○○법(영) 폐지법률안(폐지령안)”이란 명칭을 붙이고 본칙으로 해당 법령을 폐지한다는 폐지문을 쓰고 부칙에 관한 사항을 쓴다.

법률 제○○호	○○법 폐지법률안
○○법을 폐지한다.	부 칙

폐지 법령의 호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되는 법령의 호수는 폐지되는 법령의 제정 호수(해당 법령이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그 전부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법률 제○○호	○○법 폐지법률안
법률 제○호 ○○법을 폐지한다.	부 칙
